

『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
-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(19.2.11)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향후 내실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여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.

3. 주요내용

-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 적용함(안 제2조)
 - (현행) 외국 중앙정부 차원 공식행사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개최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
 - (확대) 구미시장의 요청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의원 관심 분야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
-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
 - (현행) 위원장 부의장(당연직), 위원 9인(의원 4, 민간 5)
 - (변경) 위원장 민간(호선), 위원 7인 이상(민간 2/3 이상)

-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함(안 제5조)
-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(안 제6조제7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3항)
- 공무국외출장 제한(안 제8조제1항)
 -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
 -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
 -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
 - 심사 결과 재검토인 경우
-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
 - 출장계획서 제출 :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45일전까지로 변경
 - ※ 출국 30일전에 심사위 소집
 - 출장보고서 제출 : 귀국 15일 이내에서 귀국 30일 이내로 변경
 - ※ 보고서 제출일자로부터 7일 이내 심사위에 결과를 보고하며 출장 결과를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직접 보고.

4. 검토의견

- 그동안 '규칙'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'조례'로 정하고 규칙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